

광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단139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찬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D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3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3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D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경

대금지급 연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8차전101호로 카드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6. 15. ‘D은 원고에게 19,746,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8.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D은 2018. 3. 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계약 당시 D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무를 포함하여 대출금 원금

기준 79,14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전남 장성군 E 전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2.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후 진행된 경매절차(감정가 25,251,000원)에서 2019. 8. 29.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경매개시결정 당시 위 토지에는 F조합의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근저당권,

G조합의 청구금액 20,038,213원의 가압류, H조합의 청구금액 37,955,058원의 가압류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6,082,925원의 가압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 지급명령 또는 재산명시 신청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1. 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위 지급명령 등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인 D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거나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D의 채무초과 여부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D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와 D은 1983. 12. 7. 결혼한 부부였는데 이 사건 분할계약 체결 무렵인 2018. 3. 9. 협의이혼한 사실, D은 2009.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은 피고가, 나머지 2,400만 원은 D이 근저당 대출을 받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D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협의이혼이 당사자 일방의 유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서로간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나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D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는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에 매각된 점, 이 사건 카드대금채무가 일상가사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점 등과 D과 피고의 혼인기간, D과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각 기여한 정도, 협의이혼 당시 D이 부담한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와 D의

재산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여 그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이고, 피고와 D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씩의 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D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계약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 지 목 록 부 동 산

부 동 산 의 표 시

1. 전남 장성군 대 238 제곱미터

2. 전남 장성군 호

(도로명주소) 전남 장성군

시멘트 블록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4.62제곱미터



